「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구미 확장단지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6년 10월 6일
2. **제 출 자**: 구미시장
3. **회부일자**: 2026년 10월 7일
4. **상정일자**: 2026년 10월 15일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설명자: 시립중앙도서관장 류 정 숙

2. 제안이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에 따른 구미 확장단지 조성사업의 매각수익 재투자 조항에 의거 기반시설 재투자에 해당하는 도서관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기부채납받고자 함

3. 주요내용

【취득재산】

○ 위　　치 :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1724번지

○ 대　　상 : 도서관 부지 1필지[5,000.1㎡(대)]

○ 기준가격 : 3,084백만원 ※ 2026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 구미 확장단지 조성사업 현황

- 위　　치 : 옥계동 및 산동읍 일원
- 조성면적 : 2.476㎢(75만평)
- 사업기간 : 2008. ~ 2026.
- 사 업 비 : 8,207억원
- 시 행 자 : 한국수자원공사

○ 추진현황

- 구미 확장단지 1~3단계 준공 : '24. 까지
- 구미시립산동도서관 개관 : '24. 9. 25.

※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임차

- 매각수익 재투자 협의 : '25. 1. ~ '26. 4.
- 구미 확장단지 4단계 준공 : '26. 1.
- 매각수익 재투자 협약서 체결 : '26. 4.
- 공유재산심의회 : '26. 9.

○ 향후추진계획

- 소유권 이전 : '26. 10.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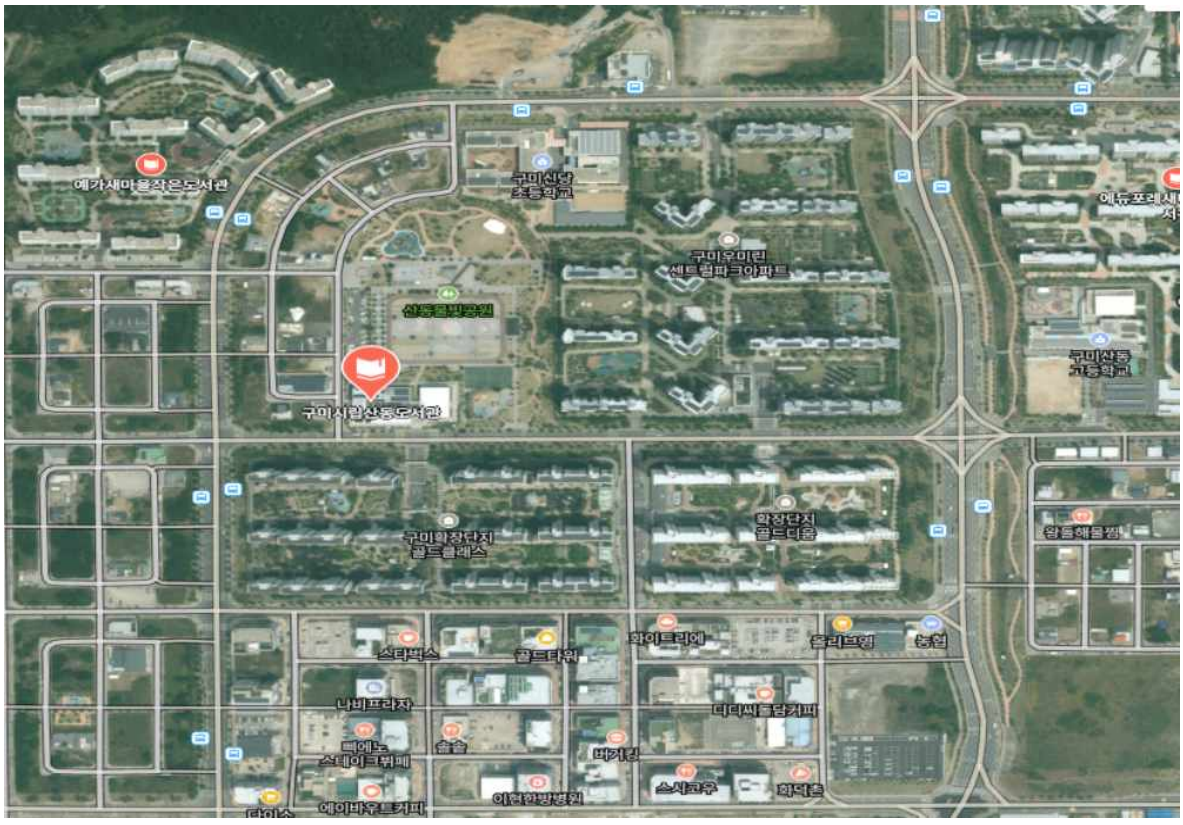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1건	5,000.1	3,084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건	5,000.1	3,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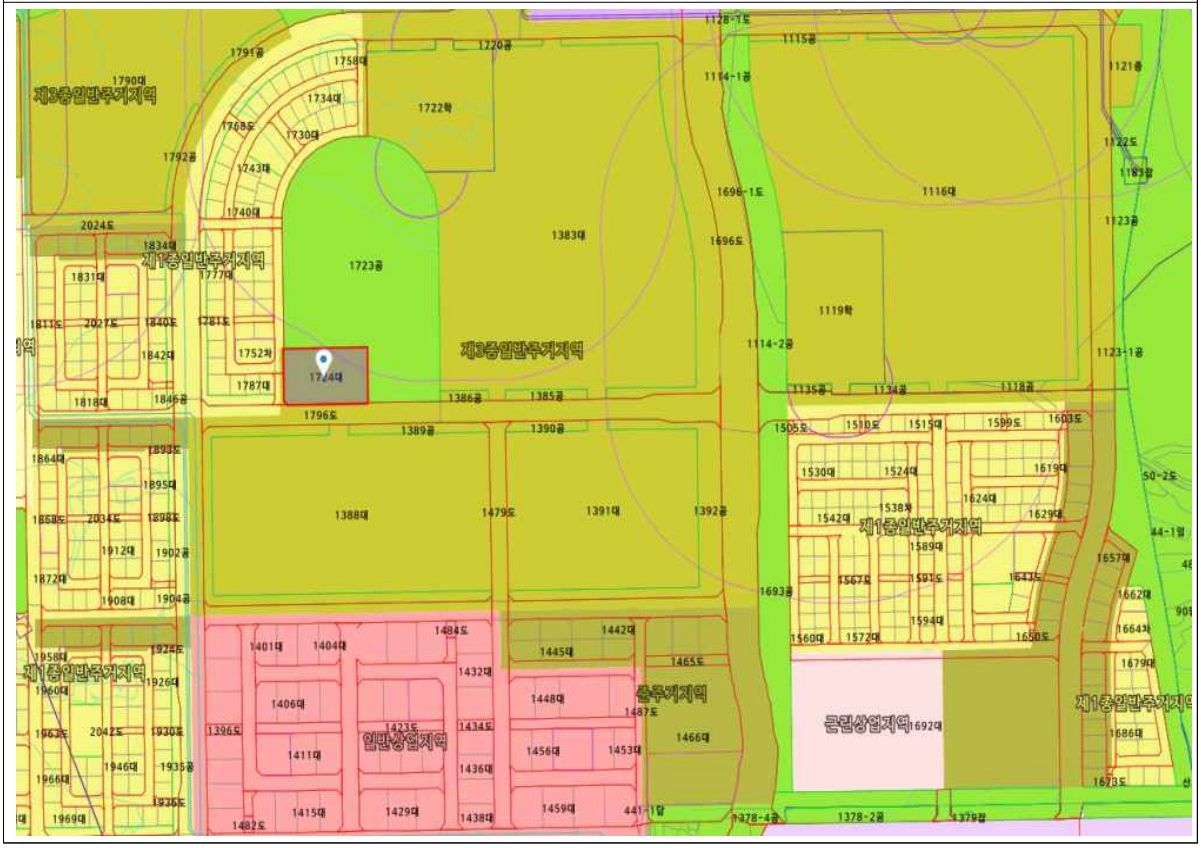
취득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사 유	재산 소유자	비고
	재산 구분	소 재 지	수량(㎡)					
총계			5,000.1	3,084				
취득	토지	산동읍 신당리 1724	5,000.1	3,084	2026년	매각수익 재투자 기부채납	한국 수자원 공사	기부 채납

위 치 도


예가새마을작은도서관
구미신당
초등학교
구미우미린
센트럴파크아파트
산동물빛공원
구미산동
초등학교
구미서림산동도서관
구미확장단지
골드클래스
확장단지
골드더숲
암음해물찜
스타벅스
골드타워
화이트리에
올리브영
농협
나비프라자
디디씨들담커피
빽에노
스테이크뷔페
솔솔
버거킹
이현한방병원
스시코우
화덕촌
에이바우트커피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Ⅲ.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장 창 곤

○ 본 관리계획안은

- 구미 확장단지 조성사업의 매각수익 재투자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산동읍 신당리 1724번지 1필지, 5,000.1㎡의 도서관 부지를 기부채납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해당 부지는 현재 구미 확장단지 내 도서관 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4년 도서관이 개관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실제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기부채납의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산업단지 매각수익을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취지에 부합하고, 별도의 매입비 부담 없이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받음으로써, 구미 확장단지 주민들의 문화·독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기부채납 이후 해당 토지가 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만큼, 기존 도서관 시설과 토지의 소유·관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Ⅴ. 토　론　요　지: 없　　음

Ⅵ.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Ⅶ. 심　사　결　과: 원안가결